어 촌 정 주 어 항 [잠 진 항] 개 발 사 업

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20. 11.

인천광역시 중구

제1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• 본 사업은 용유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및 정박과 어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어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어항의 외곽시설·계류시설·접안시설과 편익시설 기능을 모두 갖춘 어촌정주어항을 조성하기 위함

1.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• 본 사업은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으로 외곽시설 및 호안 길이가 397m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[별표 3]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.

<표 1.2 - 1>　　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	협의 요청시기
4.항만의 건설사업	가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**1) 외곽시설(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)** 2) 계류시설(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) 3) 그 밖의 어항시설(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)	**가)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** 나)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)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: 「어촌·어항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

1.3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제7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,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내용을 공개함.

▣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(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
1.4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

가. 추진현황

- 2018. 07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
- 2019. 07 :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(잠진항)
- 2019. 11 : 잠진도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(착수)
- 2020. 03 : 주민의견 조사(1차)
- 2020. 06 : 주민의견 조사(2차)
- 2020. 07 : 사업설명회(1차)
- 2020. 10. 15 ~ 11. 06 :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(서면심의)
- 2020. 11. 25 ~ 12.09 :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공개

나. 향후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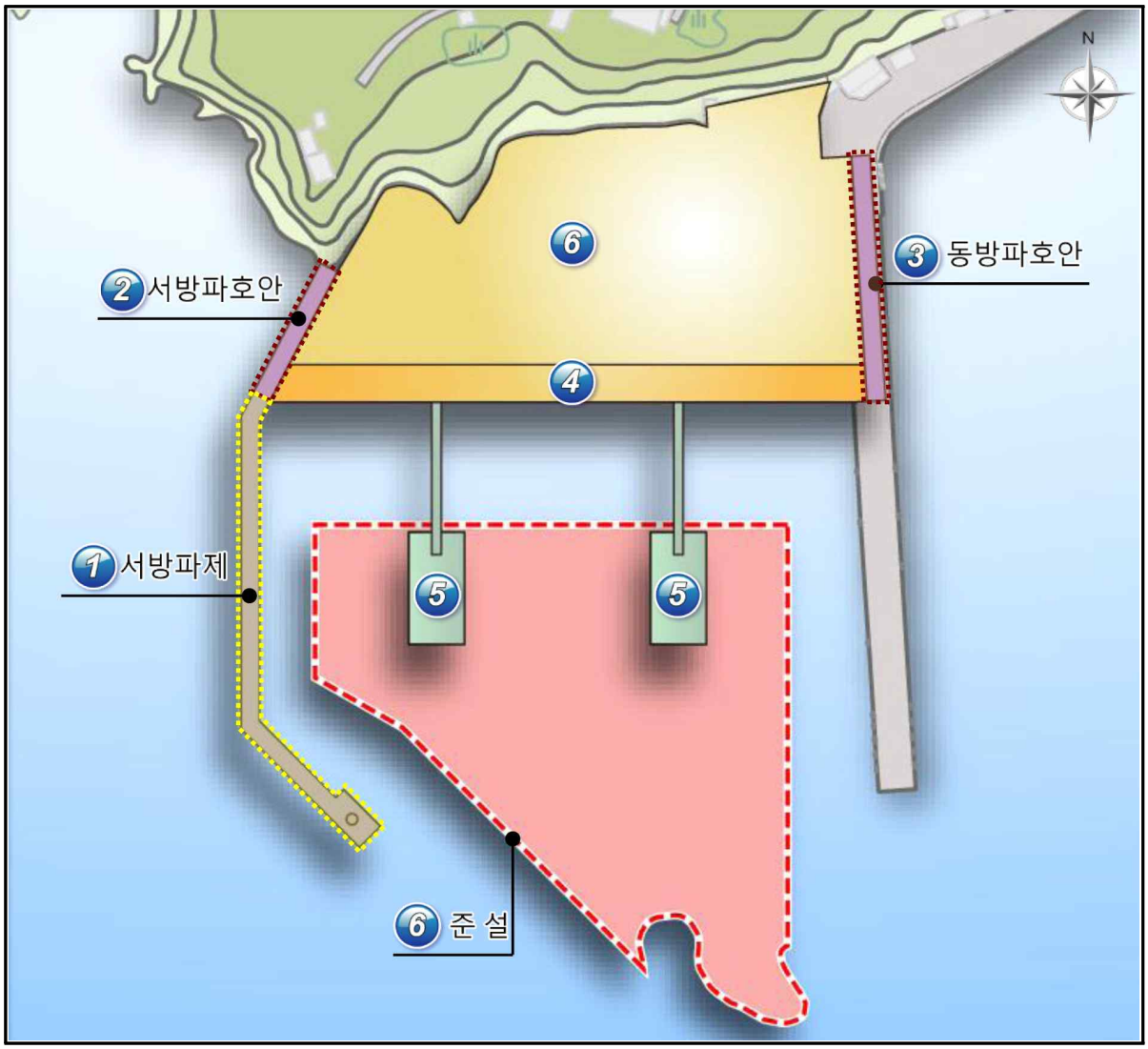
- 2021. 01. 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 예정
- 2021. 04 :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 작성 및 협의 예정
- 2021. 06 :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제출 예정

1.5 사업의 개요

- 사 업 명 :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
- 위　　치 :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03-22번지 일원(잠진도 일원)
- 총사업비 : 14,200백만원
- 사 업 자 : 인천광역시 중구
- 승인기관 : 인천광역시 중구
- 협의기관 : 한강유역환경청

<표 1.5 - 1>　　사업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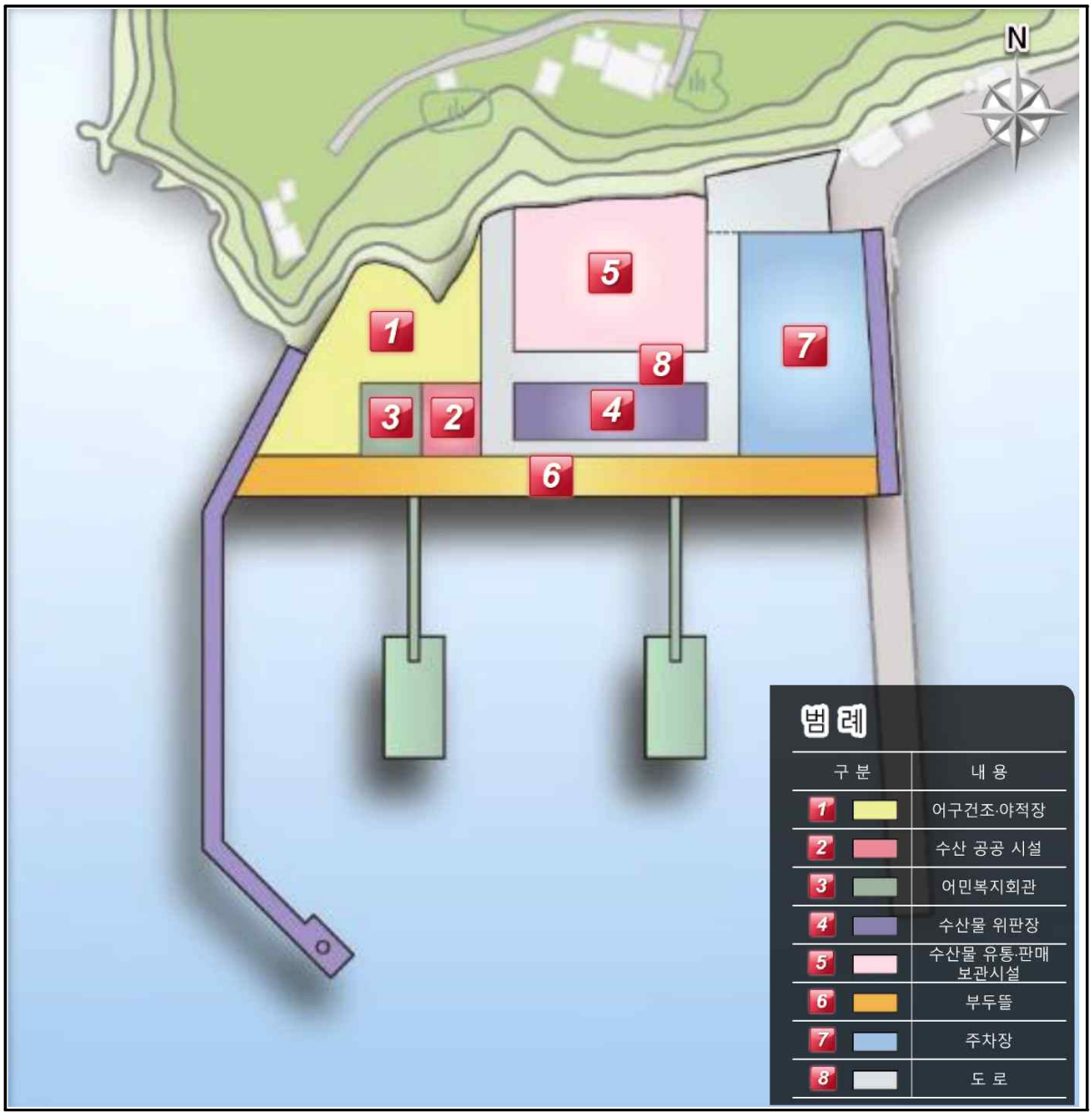
구분		시설계획	시설규모	비고
①	외곽시설	서방파제	136m	
②		서방파호안	39m	
③		동방파호안(기존선착장 보강)	65m	
④	호안시설	계류호안	157m	
⑤	접안시설	부잔교 2기	120m	
⑥	수역시설	준설 및 매립	1식	
기타		상부시설(포장, 배수, 전기 등)	1식	
		등대(서방파제 두부구간)	1기	
		부대시설(오탁방지막, 등부표 등)	1식	



[그림 1.5- 1] 배치계획도

<표 1.5- 2> 시설조성계획 (단위 : ㎡)

구분	시설별	용도별	기존현황	소요규모		비고
				기본계획	실시설계	
기본시설	기본시설	방파제	-	902	902	
		물양장(APRON), 호안	-	3,000	1,907	
	소 계		-	3,902	2,809	
기능시설	수송시설	도로	-	330	2,018	
		주차장	-	2,500	1,740	62대
	어선어구보전시설	어선건조수리장	-	-	-	
		어구건조, 야적장, 창고등	-	968	1,300	
	수산기능지원시설	급유, 급수 등	-	-	-	
		제빙·냉동처리 시설	-	-	-	
		위판장	-	-	570	
		수산물유통, 보관시설 등	-	2,000	1,650	
		해양수산공공시설 등	-	-	200	
		어항정화시설 등	-	-	-	
		소계	-	5,798	7,957	
편의시설	이용자편의시설	문화, 복지시설 등	-	200	270	
		광장, 조경시설 등	-	-	-	
		관관, 레저, 휴게시설 등	-	-	-	
	소계		-	200	270	
합 계			-	9,900	11,036	



[그림 1.5- 2] 시설배치계획도


인천국제공항
인천광역시
중 구
남북동
담북동
을왕동
용 유 도
덕 교 동
무 의 도
잠진도
사업지구
무의대교
실미도
사렴도
3km
2km
1km
0 (1cm 가 500m임.) 1500m

[그림 1.5- 3] 위치도



[그림 1.5- 4] 사업지구 위성사진

제2장 대상지역 설정

2.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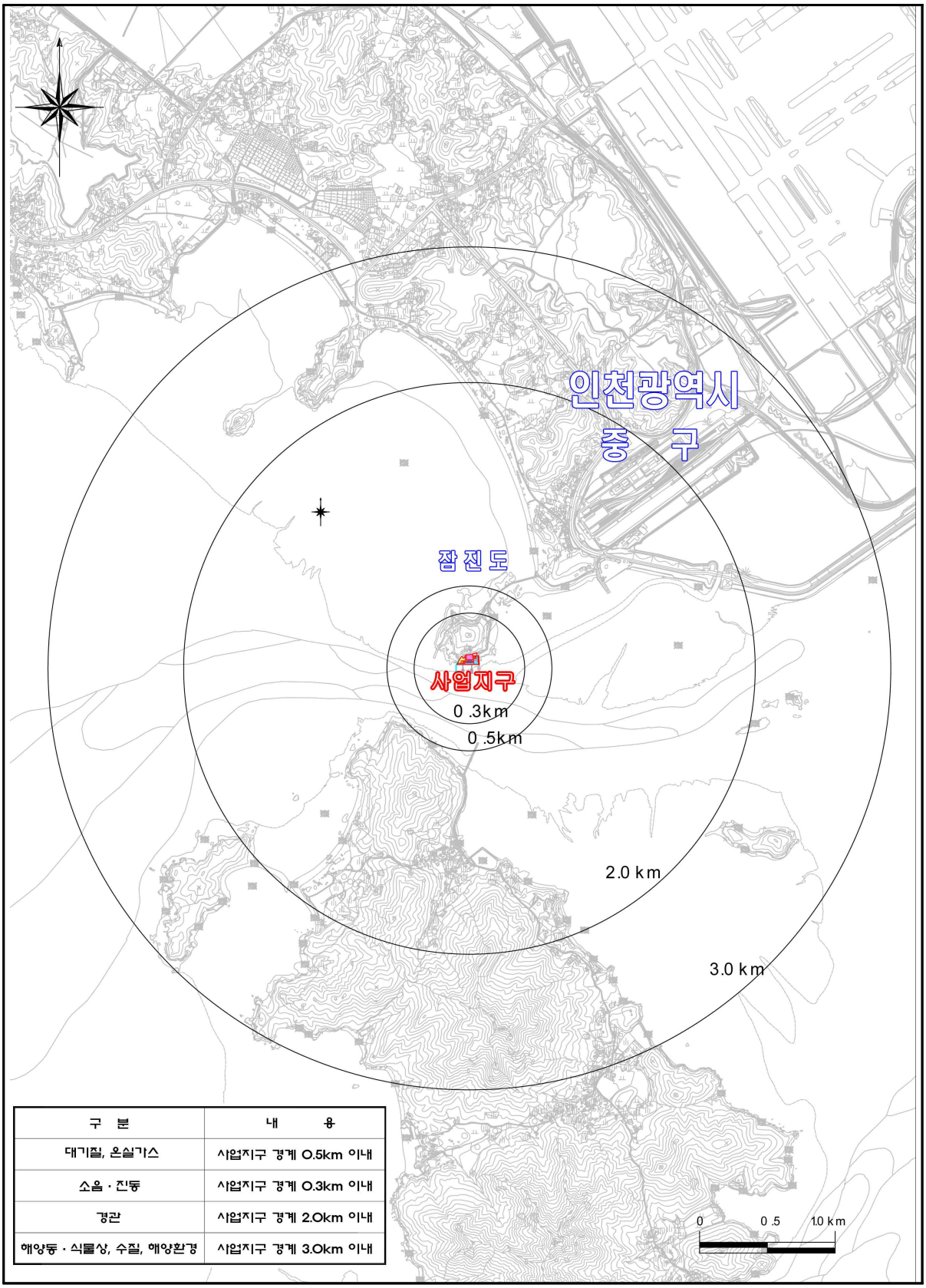
- 본 사업은 잠진도 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으로,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.
- 평가항목 선정은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)」에 제시된 평가항목별로 검토하였음.

<표 2.1- 1>　　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구 분	항 목	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	평가대상지역	비 고
자연생태환경	해양동·식물상	○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동·식물상 서식환경 변화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 이내	공사시 운영시
	자연환경자산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운영시
대기환경	기 상	○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 영향검토 및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이용	○인천기상대	-
	대 기 질	○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공사시
	온실가스	○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공사시
수환경	수 질	○공사시 투입인원에 따른 오수 발생 ○운영시 생활오수 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 이내	공사시 운영시
	해양환경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물리 변화 ○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유물질 증가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 이내	공사시 운영시

<표 계속>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구 분	항 목	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	평가대상지역	비 고
토지 환경	토지이용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	○사업지구	운영시
	토 양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침식 영향	○사업지구	공사시 운영시
	지형·지질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	○사업지구	운영시
생활 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공사시 운영시
	소음·진동	○공사시 준설, 토공 등 공정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3km 이내	공사시
	경 관	○사업시행 후 경관 변화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근경중경원경을 대상으로 3.0km 이내	운영시



구 분	내 용
대기질, 온실가스	사업지구 경계 0.5km 이내
소음 · 진동	사업지구 경계 0.3km 이내
경관	사업지구 경계 2.0km 이내
해양동 · 식물상, 수질, 해양환경	사업지구 경계 3.0km 이내

[그림 2.1- 1]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3.1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 설정

•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잠진항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평가항목을 사업의 특성 및 주변 지역개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정하였음.

<표 3.1- 1>　　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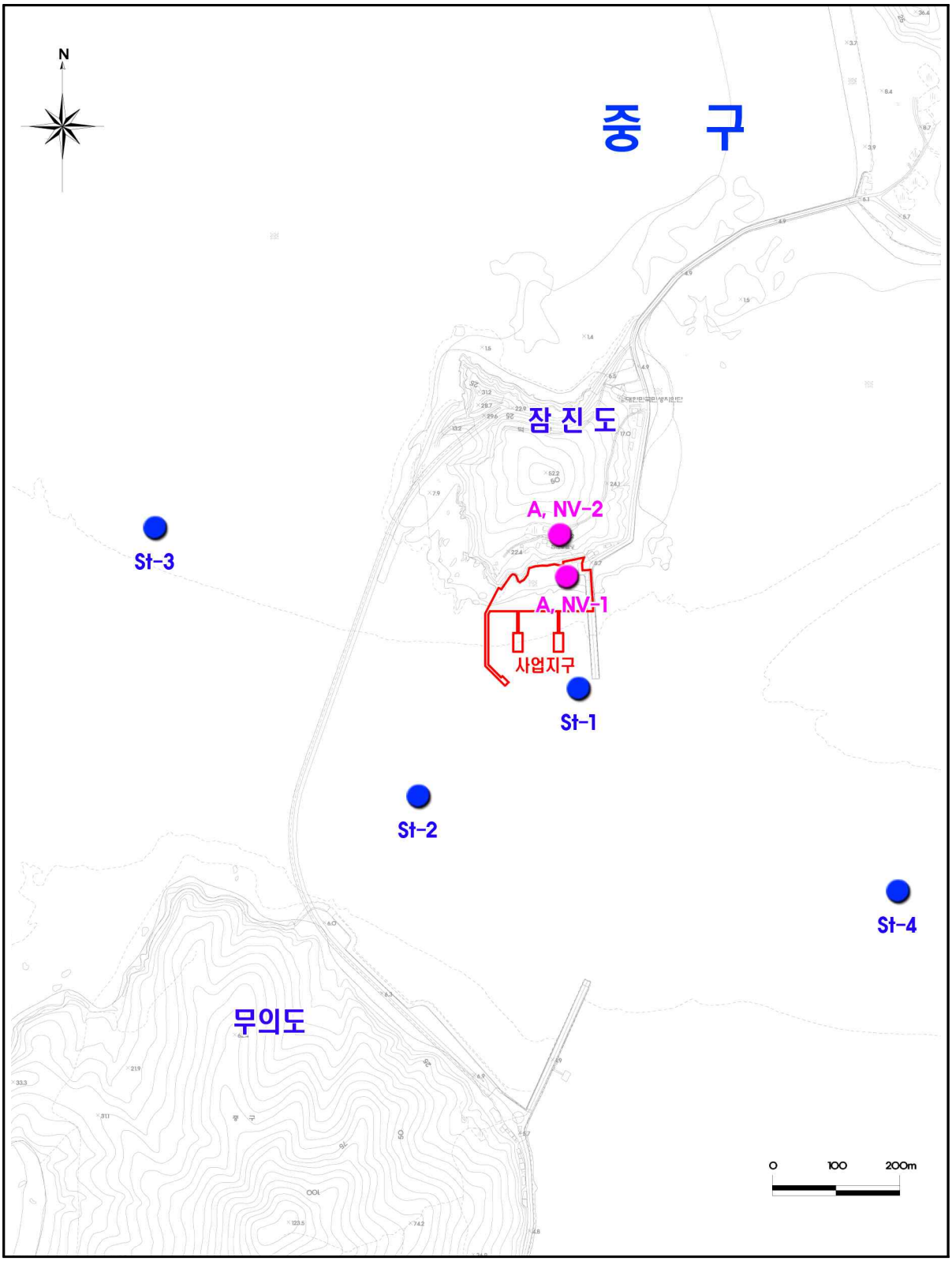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	평가범위	평가방법
자연생태환경	해양동·식물상	○사업지구 주변해역	○사업시행 전후 해양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	자연환경자산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생태경관보전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
대기환경	기상	○인천광역시	○인천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 분석
	대기질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- 예측모델 : AERMOD 모델
	온실가스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수환경	수질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 이내	○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변화 예측 및 대책 ○운영시 급수량, 오수발생량 예측 및 공급계획 수립 ○강우시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대책 수립
	해양환경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.0km 이내	○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○해양수치모형실험결과 및 기존 문헌자료 검토 ○사업지구 인근 해양물리 형태 조사
토지환경	토지이용	○사업지구	○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○토지이용계획 검토
	토양	○사업지구	○기존 문헌자료 조사 및 유사사례 검토
	지형·지질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기존 문헌자료 조사 및 유사사례 검토 ○안정성 검토
생활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
	소음·진동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3km 이내	○공사시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 예측
	경관	○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.0km 이내	○조망점 경관 분석

3.2 평가 항목별 조사 계획

• 평가 항목별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선정토록 함.

<표 3.2- 1> **조사지점 및 조사항목**

구 분	지점수	항 목	조사시기	비 고
대기질 (A)	2지점	• PM-10, PM-2.5, SO_2, CO, NO_2, O_3, 벤젠, 납(8개 항목)	• 1차 : 2021년 01월(겨울) • 2차 : 2021년 04월(봄)	-
해양수질 (St)	4정점	• 수온, 염분, pH, COD, TOC, DO, SPM, 대장균군수, T-N, DIN, T-P, DIP, Cr^{6+}, As, Cd, Pb, Zn, Cu, Hg, CN, Ni, PCB, Mn, Fe, 유기인, Chl-a, 용매추출유분, 투명도, 저층 DO 포화도(%)(29개 항목)	• 1차 : 2021년 01월(겨울) • 2차 : 2021년 04월(봄)	-
해양퇴적물 (St)	4정점	• 입도, 함수율, 강열감량, 산휘발성황화물(AVS), COD, TOC, As, Cd, Cr, Cu, Hg, Ni, Pb, Zn, Fe, PCBs, PAHs, CN, Al, Li Co, 유기인(22개 항목)	• 1차 : 2021년 01월(겨울) • 2차 : 2021년 04월(봄)	-
해양동·식물상 (St)	4정점	• 식물플랑크톤(표·저층), 동물플랑크톤, 조하대저서동물, 어란 및 자치어 • 조간대 저서동물(해조류 포함) • 해산어류	• 1차 : 2021년 01월(겨울) • 2차 : 2021년 04월(봄) • 3차 : 2021년 07월(여름)	-
소음·진동 (N·V)	2지점	• 소음도 • 진동도	• 1차 : 2021년 01월(겨울) • 2차 : 2021년 04월(봄)	-



[그림 3.2- 1] 환경질 조사지점도

제4장 약식평가절차 신청 여부

4.1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범위

• 약식평가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여부 및 범위는 <표 4.1-1>에 제시한 바와 같음.

<표 4.1- 1>　　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및 범위

환경영향평가법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제51조(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)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(이하 "약식평가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.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(이하 "약식절차"라 한다)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.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.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.	제64조(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) 법 제5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. 사업지역에 환경적·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4조에 따른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 나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바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

4.2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검토

• 본 사업은 <표 4.2- 1>에 제시된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, 평가협의회심의시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.

<표 4.1- 2>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및 범위

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범위	대상여부
○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	사업지구의 호안의 길이는 397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(300m)의 133%로 약식평가절차 대상규모에 해당됨.
○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	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4조에 따른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	해당없음
-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	해당없음
-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	해당없음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	해당없음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	해당없음
-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해당없음
-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해당없음
- 「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해당없음
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	해당없음

• 그러나, 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, 의견 제시 8인 중 약식평가에 대한 찬성의의견이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약식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.

<표 4.1- 3> 약식평가 대상여부 의견 조정

마.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
○ 협의회에서 위원 간에 약식평가 대상여부나 의견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있다.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자료 :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(안) 평가항목·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(14p) , 2011.12, 환경부

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

5.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 계획

- 공고시점 :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

- 공고장소 : 전국일간신문, 지역일간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

- 공고기간 : 20일 이상 40일 이내(공휴일 제외)

- 공고내용
 - 사업의 개요
 -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
 -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

- 공고 및 공람의 내용, 보고서 초안 및 초안 요약문 게시
 - 관계행정기관(인천광역시 중구) 정보통신망
 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-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
 - 인천광역시 중구청(농수산과)
 - 관련 행정복지센터(용유동)

5.2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

-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, 인천광역시 중구청,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서(초안)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.

5.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

5.3.1 주민설명회

- 개최시점 : 공람기간 중 실시(관련 행정복지센터 1회 실시)
- 개최장소 :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
- 개최공고 : 설명회 개최 7일전 전국일간신문, 지역일간신문에 개요,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계획임.

※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.

5.3.2 주민공청회

- 개최시점 : 주민의 개최 필요의견 제출시
 -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
 -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5명 이상이고,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% 이상인 경우
- 개최장소 :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
- 개최공고 :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일간신문, 지역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계획임.
- 공고내용
 - 사업의 개요
 - 공청회 일시 및 장소
 -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6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제7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일 시 : 2020. 10. 15 ~ 2020. 11. 06
- 방 법 : 서면심의
- 운영위원 : 위원장 포함 9인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위원장	중구 농수산과	과장	김**	
위 원	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	공무원	이**	
〃	중구 환경보호과	공무원	이**	
〃	영종환경연합	시민단체	홍**	
〃	원광대학교	토목환경공학	정**	
〃	중구 친환경조성과	공무원	배**	
〃	용유 8통장	통장	김**	
〃	인천녹색연합	시민단체	장**	
〃	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	해양지형지질	윤**	

6.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제7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.

구 분	의 견	비 고
이신영	□ 총괄의견 • 사업부지는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이므로 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'사업계획'을 수립하여야 함 • 본 계획은 해당 지역의 유지준설 및 공유수면 매립, 물양장, 신규방파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사업지역은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속해 환경보전을 위해 해역내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의 수리적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,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• 대기질, 소음진동의 평가대상 지역범위는 기상 현황(주풍향 등) 및 주변 정온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• 동·식물상 평가대상지역(중점지역) 범위는 생태계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외곽구조물 등의 설치 계획 시 해양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·비교하고 선정된 공법에 대한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– 제방 및 호안의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 • 사업지역의 해양생태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해양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순위를 구성하여야 함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(동·식물상) 동·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·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, 조사 횟수, 지점·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• (대기, 소음·진동) 대기질 및 소음·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환경부)」 및 주변 정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– 동일 항계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므로, 소음진동,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누적영향에 대해 검토·제시 필요 • (수질) 공사 및 운영 시의 해양목표수질을 설정하고, 수질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– 오탁방지막은 이중으로 설치하여 인근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 – 준설토의 이동, 보관, 처리 등에 따른 이차적인 수질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행	

구 분	의 견	비 고
이신영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주변해역 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,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–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자료의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기간은 최소기준(20일) 이상 계획 – 공람 및 설명회 이외에도 관련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준설이 함께 들어가는 시설물 설치사업이며 어업시설 이외에 도로, 주차장,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식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	
	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 • 계획 추진의 목적, 배경, 추진경위,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•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,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•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

구 분	의 견	비 고
이희주	□ 총괄의견 •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향후 환경피해 (생태계, 대기, 수질, 토양, 악취, 소음, 진동 등)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 후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하여야 함.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해양동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해양환경 항목에 대한 대상지역 설정시 사업지구 주변해역, 주변지역으로 명시하시 말고 구체적으로 거리를 설정하여야 하며, 해양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범위를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의견없음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해양동식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상세히 하여 어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. • 어떠한 매립토를 사용하는지를 명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토를 상세히 한 후,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대상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.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의견없음	
	6. 기타 •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, 그림,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	

구 분	의 견	비 고
홍소산	□ 총괄의견 • 본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함 •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강구·시행하여야함 • 공사시 발생할 미세먼지 쓰레기 폐기물 등 관리 철저하게 바닷가 오탁방지 준수, 갯벌에 미생물과 조류 등에 대하여 관리방안 마련.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의견없음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의견없음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의견없음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주민에게 플랜카드 홍보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의견없음	
	6. 기타 •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, 관리방안마련 • 미세먼지 준수 • 향후 쓰레기와 폐기물 등 관리방안 마련	

구 분	의 견	비 고
정신택	□ 총괄의견 • 잠진항 개발사업의 경우,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, 강한 조류 및 큰 조차로 인하여 해양 물리 및 해저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. 특히 어항 동쪽에 위치한 기존 선착장의 경우, 일부를 보강하여 동방파호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으나, 잔여 선착장의 활용 및 처리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. 또한 준설 및 매립 면적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시공 및 어항 운영시 수역시설내의 토사 퇴적, 매몰 및 부유사 확산 등으로 준설 필요성이 예측되는 등 약식평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.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자연생태 및 수환경 평가대상지역의 경우, '사업지구', 혹은 '사업지구 주변해역'으로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음. 대상지역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, 보고서 12쪽 [그림 2.1-1]에 대상지역을 도시(圖示)하여 제시.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잠진항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는 불가피하나, 보고서에서 환경보전방안 대안에 대한 검토가 누락됨.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중 해양물리(수심, 수온, 염분, 탁도, 조류, 조위, 파랑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필요함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의견수렴계획은 적정하며, 추가로 관계행정기관(한강유역환경청, 인천광역시, 인천시 중구청 등)의 의견수렴도 필요함.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대상지역은 방파제와 호안길이가 총 397 m(방파제 136 m, 호안 261 m)에 이르고, 동쪽에는 기존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해양물리, 해양수질 및 해저지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약식평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.	
	6. 기타 • 잠진항 서쪽에 서방파제(길이 136 m)와 서방파호안(길이 39 m) 신규 건설, 동쪽에 기존 선착장의 일부를 보강하여 동방파호안(65 m)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. 잔여 선착장의 활용 및 처리 계획과 동방파제 신규 건설의 필요성 등을 해양물리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	

구 분	의 견	비 고
배연호	□ 총괄의견 •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로서 계획에 따른 공사시 비산먼지,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사업시행 시 주변 주민 주거지역 환경영향치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특이사항없음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동·식물상 법정 보호종 및 희귀종에 대한 보호 및 보전대책이 필요함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「환경영향평가법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공고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·공람 및 설명회 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.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의견없음	
	6. 기타 • 의견없음	

구 분	의 견	비 고
김광일	□ 총괄의견 • 빠른 진행을 위해 약식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청회를 꼭 부탁합니다.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적정하다고 사료됨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적정함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적정함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.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신청함	
	6. 기타 • 의견없음	

구 분	의 견	비 고
장정구	□ 총괄의견 • 무의도와 잠진도 사이인 해당지역은 조류흐름의 변화에 따라 주변지형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. 조류의 흐름, 그에 따라 주변지형 변화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제시해야함. • 특히 용유도와 잠진도 사이의 제방을 일부 교량형태로 변경하는 등 생태계복원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해당사업이 주변 해양과 갯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함 • 조류와 조석변화에 따른 정확한 측정자료를 제시해야함.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조류 등으로 인해 해당사업은 주변지역에 폭넓게 끼칠 수 있음. 해양동식물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지역을 주변지역 3km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 • 수환경의 수질과 해양환경은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조류를 따라 주변해역으로 넓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. 적어도 3km이상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함. • 경관도 주요조망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2km 이상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해야 함.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의견없음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기후위기시대로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함. 토양의 경우에도 사업의 영향으로 해안침식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.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사업으로 인한 폭넓은 영향이 예상됨. 요약문이 아닌 내용 전체를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올리고 주민 등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공람공고기간을 두어야 함.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해당사업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약식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.	
	6. 기타 • 의견없음	

구 분	의 견	비 고
윤길림	□ 총괄의견 • 잠진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검토내용이 원만하게 수립되고 주변환경이 공사시나 운영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	
	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• 평가대상지역 설정이 무리없이 설정됨	
	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• 준설 및 매립공사 시 발생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공법을 반영하여 폐기물 저감을 제시함(뒷채움재나 매립재료 활용)	
	3.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 •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요소별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절함	
	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•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됨(주민공청회 및 추가의견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수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추진해야함)	
	5.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• 대상사업 해당 여부 및 범위 검토가 적절히 반영됨	
	6. 기타 • 공사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도 있음	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)

□ **총 괄 의 견**

○ 사업부지는 시화호·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이므로 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'사업계획'을 수립하여야 함

○ 본 계획은 해당 지역의 유지준설 및 공유수면 매립, 물양장, 신규방파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사업지역은 시화호·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속해 환경보전을 위해 해역내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의 수리적·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
□ **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**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,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○ 대기질, 소음·진동의 평가대상 지역범위는 기상 현황(주풍향 등) 및 주변 정온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

○ 동·식물상 평가대상지역(중점지역) 범위는 생태계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

2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외곽구조물 등의 설치 계획 시 해양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·비교하고 선정된 공법에 대한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
- 제방 및 호안의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

○ 사업지역의 해양생태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해양생태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순위를 구성하여야 함

3. 평가항목 및 범위 · 방법 등

○ **(동·식물상)** 동·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·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, 조사 횟수, 지점·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

○ **(대기, 소음·진동)** 대기질 및 소음·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환경부)」및 주변 정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

- 동일 항계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므로, 소음·진동,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누적영향에 대해 검토·제시 필요

○ **(수질)** 공사 및 운영 시의 해양목표수질을 설정하고, 수질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

- 오탁방지막은 이중으로 설치하여 인근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
- 준설토의 이동, 보관, 처리 등에 따른 이차적인 수질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·이행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주변해역 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,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

-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자료의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기간은 최소기준(20일) 이상 계획
- 공람 및 설명회 이외에도 관련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

5.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○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준설이 함께 들어가는 시설물 설치사업이며 어업시설 이외에 도로, 주차장,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식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
○ 계획 추진의 목적, 배경, 추진경위,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○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,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○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. 11. .

심의위원 이 ☐ (인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)

□ **총 괄 의 견**

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향후 환경피해 (생태계, 대기, 수질, 토양, 악취, 소음, 진동 등)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 후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하여야 함.

□ **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**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- 해양동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해양환경 항목에 대한 대상지역 설정시 사업지구 주변해역, 주변지역으로 명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거리를 설정하여야 하며, 해양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범위를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
3. 평가 항목 및 범위·방법 등
- 해양동식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상세히 하여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.
- 어떠한 매립토를 사용하는지를 명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토를 상세히 한 후,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- 대상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.

5. 양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
6. 기타
-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, 그림,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

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. 11 . 12 .

심의위원 이 ☐ (인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(양식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【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】

□ **총 괄 의 견**

○ 본 협의내용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
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 강구·시행하여 함
공사 시 발생할 미세먼지 쓰레기 폐기물 등 관리 철저하게, 바닷가 오탁방지 준수,
갯벌에 미생물과 조류 등에 대하여 관리방안 마련.

□ **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**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○
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○

3. 평가 항목.범위.방법 등
○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주민에게 프랭카드 홍보

5. 약식평가 신청
○

6. 기 타
○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, 관리방안마련

미세먼지 준수

향 후 쓰레기와 폐기물 등 관리방안 마련

2020. 11. 09.

심의위원 홍 ☐ (인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(양식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【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】

□ 총 괄 의 견

○ 잠진항 개발사업의 경우,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, 강한 조류 및 큰 조차로 인하여 해양 물리 및 해저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. 특히 어항 동쪽에 위치한 기존 선착장의 경우, 일부를 보강하여 동방파호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으나, 잔여 선착장의 활용 및 처리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. 또한 준설 및 매립 면적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시공 및 어항 운영시 수역시설내의 토사 퇴적, 매몰 및 부유사 확산 등으로 준설 필요성이 예측되는 등 약식평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○ 자연생태 및 수환경 평가대상지역의 경우, '사업지구', 혹은 '사업지구 주변해역'으로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음. 대상지역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, 보고서 12쪽 [그림 2.1-1]에 대상지역을 圖示하여 제시.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○ 잠진항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는 불가피하나, 보고서에서 환경보전방안 대안에 대한 검토가 누락됨.
3. 평가 항목.범위.방법 등
○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중 해양물리(수심, 수온, 염분, 탁도, 조류, 조위, 파랑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필요함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의견수렴계획은 적정하며, 추가로 관계행정기관(한강유역환경청, 인천광역시, 인천시 중구청 등)의 의견수렴도 필요함.
5. 약식평가 신청
○ 대상지역은 방파제와 호안길이가 총 397 m(방파제 136 m, 호안 261 m)에 이르고, 동쪽에는 기존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해양물리, 해양수질 및 해저지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약식평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.
6. 기 타
○ 잠진항 서쪽에 서방파제(길이 136 m)와 서방파호안(길이 39 m) 신규 건설, 동쪽에 기존 선착장의 일부를 보강하여 동방파호안(65 m)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. 잔여 선착장의 활용 및 처리 계획과 동방파제 신규 건설의 필요성 등을 해양물리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

2020. 11. 3.

심의위원 정 [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)

□ 총 괄 의 견

○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로서 계획에 따른 공사시 비산먼지,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○ 사업시행 시 주변 주민 주거지역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○ 특이사항 없음
3. 평가 항목 및 범위·방법 등
○ 동·식물상 법정 보호종 및 희귀종에 대한 보호 및 보전대책이 필요함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·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.
5. 양식평가 신청가능 여부
-
6. 기타
-

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. 11. 6.

심의위원 배 [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

친환경조성과 / 한상훈 / 2020-11-06 09:04:2

SK telink MobileFax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(양식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【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】

□ 총 괄 의 견

○ 빠른 접근을 위해 약식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○ 자세히 서술.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○ 자세히
3. 평가 항목.범위.방법 등
○ 자세히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.
5. 약식평가 신청
○ 신청함
6. 기 타
○

2020. . .

심의위원 []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[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]

□ 총괄의견

- 무의도와 잠진도 사이인 해당지역은 조류흐름의 변화에 따라 주변지형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. 조류의 흐름, 그에 따라 주변지형 변화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제시해야 함.
- 특히 용유도와 잠진도 사이의 제방을 일부 교량형태로 변경하는 등 생태계복원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해당사업이 주변 해양과 갯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함.
- 조류와 조석변화에 따른 정확한 측정자료를 제시해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- 조류 등으로 인해 해당사업은 주변지역에 폭넓게 끼칠 수 있음. 해양동식물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지역을 주변지역 3km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수환경의 수질과 해양환경은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조류를 따라 주변해역으로 넓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. 적어도 3km이상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함.
- 경관도 주요조망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2km 이상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해야 함.
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
3.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
- 기후위기시대로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함. 토양의 경우에도 사업의 영향으로 해안침식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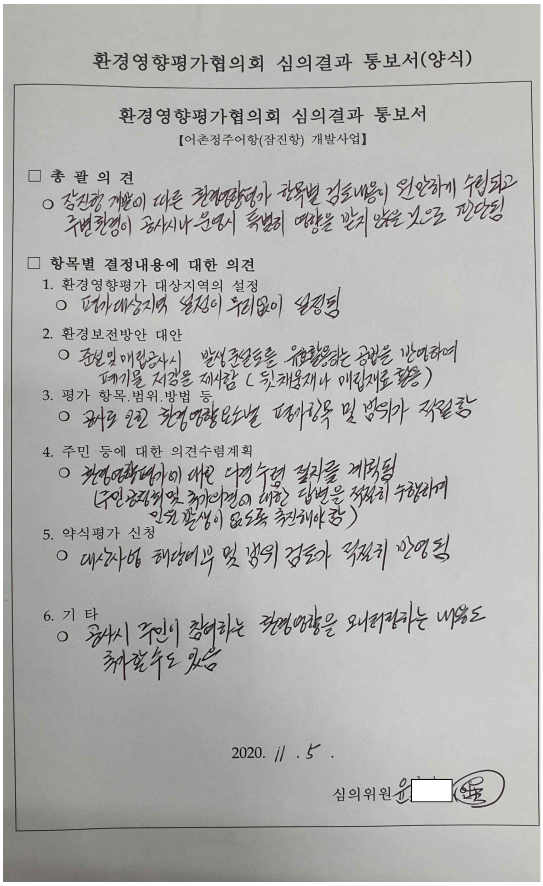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- 사업으로 인한 폭넓은 영향이 예상됨. 요약문이 아닌 내용 전체를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올리고 주민 등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공람공고기간을 두어야 함.

5. 약식평가 신청
- 해당사업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약식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함.

6. 기타

2020. 11. 6.

심의위원 장 []

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(양식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【어촌정주어항(잠진항) 개발사업】

□ 총 괄 의 견

○ 잠진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이 항목별 검토내용이 전반적에 수립되고 주변환경이 공사시나 운영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○ 평가대상지역 설정이 무리없이 설정됨

2. 환경보전방안 대안
○ 준설및 매립공사시 발생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공법을 반영하여 폐기물 저감을 제시함 (뒷채움재나 매립재로 활용)

3. 평가 항목.범위.방법 등
○ 주요 예측 환경영향 요소별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절함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절차를 계획됨 (주민공청회및 추가의견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수행하며 인적 물적이 필요로 충분히 보강함)

5. 약식평가 신청
○ 대상사업 해당여부 및 생태 검토가 적절히 반영됨

6. 기 타
○ 공사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추가할수도 있음

2020. 11. 5.

심의위원 윤[redacted] (인)

-